

1.연말정산 세법 분야

구분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소득세 최고세율 조정</p>	<p>■ 소득세 과세표준·세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4 285 648 644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 원 이하</td> <td>6</td> </tr> <tr> <td>1,200 ~ 4,600만 원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4,600 ~ 8,800만 원</td> <td>24</td> </tr> <tr> <td>8,800 ~ 1억 5천만 원</td> <td>35</td> </tr> <tr> <td>1.5 ~ 3억 원</td> <td>38</td> </tr> <tr> <td>3 ~ 5억 원</td> <td>40</td> </tr> <tr> <td>5억 원 초과</td> <td>4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(%)	1,200만 원 이하	6	1,200 ~ 4,600만 원	15	4,600 ~ 8,800만 원	24	8,800 ~ 1억 5천만 원	35	1.5 ~ 3억 원	38	3 ~ 5억 원	40	5억 원 초과	42	<p>■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88 285 1085 644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 원 이하</td> <td>6</td> </tr> <tr> <td>1,200 ~ 4,600만 원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4,600 ~ 8,800만 원</td> <td>24</td> </tr> <tr> <td>8,800 ~ 1억 5천만 원</td> <td>35</td> </tr> <tr> <td>1.5 ~ 3억 원</td> <td>38</td> </tr> <tr> <td>3 ~ 5억 원</td> <td>40</td> </tr> <tr> <td>5 ~ 10억 원</td> <td>42</td> </tr> <tr> <td>10억 원 초과</td> <td>4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 세법개정안</p>	과세표준	세율(%)	1,200만 원 이하	6	1,200 ~ 4,600만 원	15	4,600 ~ 8,800만 원	24	8,800 ~ 1억 5천만 원	35	1.5 ~ 3억 원	38	3 ~ 5억 원	40	5 ~ 10억 원	42	10억 원 초과	45	<p>소득세법 ('21.1.1.)</p> <hr/> <p>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044-215-4211)</p>
과세표준	세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 원 이하	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 ~ 4,600만 원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 ~ 8,800만 원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 ~ 1억 5천만 원	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5 ~ 3억 원	3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 ~ 5억 원	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 원 초과	4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세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 원 이하	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 ~ 4,600만 원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 ~ 8,800만 원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 ~ 1억 5천만 원	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5 ~ 3억 원	3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 ~ 5억 원	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 ~ 10억 원	4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억 원 초과	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</p>	<p>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: 5년</p>	<p>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: 10년</p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<p>조세특례제한법 ('21.1.1.)</p> <hr/> <p>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044-215-4136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</p>	<p>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</p> <p>• 적용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- 4억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	<p>■ 공제 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5억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 한 차입금 이자 <p>☞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 세법개정안</p>	<p>소득세법 ('21.1.1.)</p> <hr/> <p>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044-215-4211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필요 경비 산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이월 공제기간 : 5년 <p>〈추가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년 → 10년 이월공제기간(10년)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 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(필요경비)으로 산입가능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)보도자료)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<p>소득세법, 법인세법 ('21.1.1.)</p> <hr/> <p>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(044-215-4243)</p>
신문(종이)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비 범위 확대 • 도서 구입비('18.7월) • 공연 관람비('18.7월) •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('19.7월) <p>* 문화비 소득공제란? -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, 신문(종이) 구독에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혜택 적용 (최대 100만 원, 공제율 30% 적용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비 범위 확대 • 도서 구입비('18.7월) • 공연 관람비('18.7월) •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('19.7월) • 신문(종이) 구독료('21.1월) 	<p>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2 ('21.1.1.)</p> <hr/> <p>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(044-203-3214)</p>
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영리법인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영리법인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장(주사무소 및 관할세무서장 포함)의 추천을 받아야 함 <p>☞ (참고) 국세청 홈페이지)국세신고안내) 법인)공익법인)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</p>	<p>법인세법 시행령 제39 ('21.1.1. 이후)</p> <hr/> <p>국세청 법인세과 (044-204-3327)</p>